

국가장학금 운영지침

제정 2013. 4. 1

개정 2013. 9. 1

개정 2014. 4. 1

개정 2014. 9. 1

개정 2016. 9. 1

제1조(목적) 본 지침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운영지침 및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학칙 제50조에 의거 학생의 면학열을 고취시키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생의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 지침은 당해연도 국가장학금 I, II 유형의 지급 시 적용한다.

제3조(장학생의 자격) ① 국가장학금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지급일자 기준으로 재학중인 자(단, 감면된 장학금은 등록여부를 기준으로 한다.)
2.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
3.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정하는 국가장학 I, II 유형 지원 자격자

제4조(국가장학금의 종류) ①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의 구분에 따른다.

1. 국가장학 I 유형 : 소득분위에 따라 당해연도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정하는 금액 지급
2. 국가장학 II 유형 : 소득분위 및 성적을 기준으로 본 지침에 의해 지급

제5조(국가장학 II 유형의 지급범위 및 기준)

① 국가장학 II 유형은 다음의 각 호를 우선으로 지급한다.

1.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한국장학재단의 당해연도 지급지침을 준수해 지급한다.
2. 삭제
3. 그 외 장학금 지급은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지원대상 소득분위와 금액은 예산에 따라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② 국가장학 II 유형의 효율적 지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심의하는 장학사정관제를 운영하며 장학사정관은 장학위원회와 겸직한다.

1. 국가장학 자격미달자 중 실질적 가계곤란자 및 국가장학 우선선발 대상자

제6조(지급방법) 국가장학금은 장학생 본인에게 지급하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학자금 상환으로 지급한다.

제7조(기타)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운영지침 및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이 지침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